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26호 2023. 6. 5(월)

선 람	기관의 장

규 칙

- 남원시 규칙 제729호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 1

훈 령

- 남원시 훈령 제448호 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----- 4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「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3년 6월 5일

남원시 규칙 제 729 호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, 일자리경제과장”을 “일자리경제과장”으로 “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수의사무관·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”를 “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수의사무관·지방환경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-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,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시 보

현 행	개 정 안
<p><u>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수의사무관·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,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녹지사무관·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</u></p>	<p><u>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수의사무관·지방환경사무관으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「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3년 6월 5일

남원시 훈령 제 448 호

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장 총칙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안전경제건설국”을 “안전건설국”으로, “과 상황실 전담인력 1명으로 구성한다”를 “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,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근무반은 2인 1조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
- 1. 주간: 재난관리담당 직원 1명, 사회복지무요원 1명,
- 2. 야간: 상황실 숙직자 1명, 사회복지무요원 1명

제7장(제14조부터 제18조까지)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3조(구성) <u>남원시 재난안전상황실(이하 “상황실”이라 한다)은 안전경제건설국 내에 두며, 재난안전상황실장(이하 “상황실장”이라 한다)과 상황실 전담인력 1명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</u></p> <p>제14조(결원보충) <u>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5조(근무기간 및 인사우대) <u>상황실 전담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부서 전보, 승진 가점부여, 해외연수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제3조(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안전건설국 -----</u> ----- -----<u>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,</u> <u>② 근무반은 2인 1조로 편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</u></p> <p>1. 주간: <u>재난관리담당 직원 1명, 사회복지무원 1명,</u></p> <p>2. 야간: <u>상황실 숙직자 1명, 사회복지무원 1명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6조(수당) 상황실 근무자에게</u> <u>는 「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</u> <u>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</u> <u>근무수당을 지급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7조(교육·훈련) 상황실장은</u> <u>상황실 근무자에게 상황관리를</u> <u>위하여 필요한 자체 교육·훈련</u> <u>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8조(근무환경 조성) 상황실장</u> <u>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</u> <u>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</u> <u>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</u> <u>한다.</u></p>	<p><삭 제></p>